

대한변리사회 제품특허인증사업

인증마크 및 인증서 사용설명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인증서 및 인증마크 **준수의무**

대한변리사회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하 '인증기업')은 「제품특허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기준」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증기업은 이 기준 및 이 회의 「제품특허인증처리 규정」 등 관계 규정 및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따라야 함

또한, 인증서 및 인증마크 홍보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등에 어긋나게 홍보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관련 사항 적발시 인증 취소 및 민·형사상의 처벌에 처할 수 있음

1. 대한변리사회의 인증을 받은 기업(인증기간 유효하여야 함)에 한하여 인증서 및 인증마크는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증마크 및 인증서는 타 기업등의 제품을 비방·비하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한변리사회와의 제휴, 보증, 후원 등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2. 인증마크는 인증서에 명시된 인증범위와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광고물인 경우 반드시 인증범위를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인증기업은 대한변리사회 또는 대한변리사회가 인증한 인증서 및 인증마크와 관련하여 분쟁을 유발하거나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4. 인증기업은 인증내용을 오인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과대광고안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인증마크 및 인증서를 약어, 색 변경 등 변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증받은 목적(특허적용 유·무) 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인증기업은 인증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사용 행위를 변경하거나 관련된 모든 홍보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6. 인증기업은 인증마크의 구체적인 사용요령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변리사회에 문의하여 서면승인을 받으신 이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인증마크 사용방법



Gold Mark

특허적용 10개 이상



Silver Mark

특허적용 4-9개



Bronze Mark

특허적용 3개 이상

1. 인증마크 원본을 홍보 대상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가로 15MMX 세로 10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 내용이 식별되어야 합니다.
2. 인증마크 지나치게 강조하여 대한변리사회의 제품 등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서는 안됩니다.
3. 인증마크는 그 색상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때, 대한변리사회가 부여한 인증마크의 색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인증색을 흑백 등으로 변경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인증서 사용방법



1. 인증서는 대한변리사회로부터 인증 받은 범위 내에서 홍보 및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인증서 홍보시 대한변리사회로부터 인증 받은 모든 내용이 식별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품특허인증사업

사용기준 위반시 제재사항

인증기업 등이 인증마크 및 인증서를 오용 또는 남용하여 표기·광고할 경우 대한변리사회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때, 「제품특허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별도의 사항을 정하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단순오용일 경우

» 인증기업은 홍보물을 회수하고 내용을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 조치동안 인증기업 등의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효력은 정지

- 가. 인증마크 및 인증서의 인증범위 내 단순한 오타인 경우
- 나. 인증마크 및 인증서의 원본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확대·축소한 경우
- 다. 기타 지식재산감정위원회가 단순오용으로 판단한 경우

✓ 고의오용·남용일 경우

단순오용에 대하여 30일 이상 미조치	경고 1회
승인된 인증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홍보 등 시행	취소 처분
인증기업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등의 행위	취소 처분
기타 지식재산감정위원회가 고의오용 또는 남용으로 판단한 경우	취소 처분

✓ 인증기업은 관계 법령 또는 이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아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인증사실을 인용한 모든 표시·광고 또는 관련 홍보물의 즉시 삭제·폐기·철거 등 사용 중단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업이 인증마크나 인증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한변리사회는 시정조치 내용 및 기한이 명시된 시정조치요구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가. 인증기업은 시정조치요구서에서 제시한 기한 이내에 시정조치결과를 제출 필요
- 나. 시정조치 완료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조치를 취함
- 다. 인증기업은 대한변리사회가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현황을 요청할 경우 관련 서류에 대한 감독 검사를 받아야함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돼요!



임의로 인증마크 색상 변경



인증마크 인식이 불가하도록 변경



지나치게 크기 변경



배경, 그라데이션 등 임의 효과 사용



인증마크를 인위적으로 왜곡



폰트 변경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방법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리사회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